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2025. 3. 20.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저 축 은 행 중 앙 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5
1.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6
①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6
②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햇살론 가중치 부여	7
③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제공	8
④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	9
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10
2.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11
①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11
② 중소형사 개인신용대출 취급 유인 제공	12
③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12
3.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13
① 자율적 M&A 활성화	13
②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영	15
③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	16
④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17
⑤ PF 新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반영	17
IV. 향후 계획	18

I. 추진 배경

□ 저축은행은 '72년 私금융 양성화를 위한 제도화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음

* ('72년)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02년) 상호신용금고 → 상호저축은행 명칭 변경 등

** 자산(조원) : ('00말) 21.9 → ('10말) 86.9 → ('20말) 92.0 → ('24말) 120.9

○ 그러나, 저신용 취약차주 대출과 부동산 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여신 구조* 형성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11년~'14년) 등

□ 최근 코로나 여파,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 능력 저하,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위기·부실 문제가 다시 부각

○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업계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양적 성장 과정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가 확대되었고, 지방 기반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

* 자산규모별 순이익('23말→'24말, 억원) : <대형(총자산 5조원↑, 5개사)> 1,311 → 2,374(+1,063)
<중형(1~5조원 26개사)> △6,642 → △4,768(+1,874) <소형(1조원↓, 48개사)> △427 → △1,580(△1,153)

□ 저축은행의 반복되는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본연의 서민금융 증대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이 필요

○ 지역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활성화하고,

○ 선제적 부실채권 정리 지원과 시장자율적 구조조정 활성화로 복원력을 제고하는 등 보다 역동적인 영업환경 조성이 필요

◇ (1단계) 당면한 위기 극복과 본연의 역할 회복 지원방안 추진
(2단계) 업권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 등을 감안한 新 규제체계 마련 등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II.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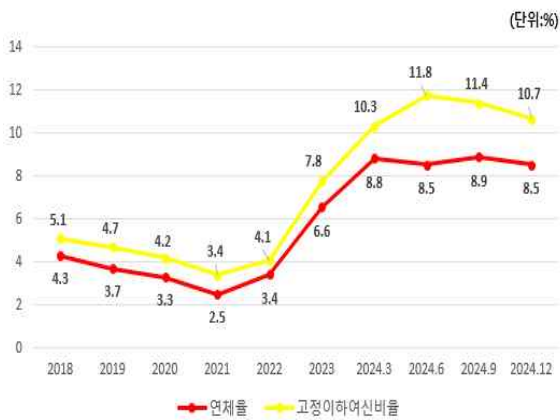
□ 부동산PF 대출 부실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실적 악화

- 부동산PF 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화 등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23년 이후 적자 시현중*

* 당기순이익(억원) : 15,622('22년) → △5,758('23년) → △3,974('24년)

- '24년 이후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는 둔화 추세이며, BIS비율은 자본확충 등으로 개선

<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



< BIS자기자본비율·대손충당금적립률 >



□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른 서민금융공급 축소

- (개인신용대출) '24년 신규 취급액(분기평균 3.6조원)은 '23년 대비 증가했으나, '21~22년(분기평균 4.9조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 (보증부대출) '24년 신규 취급액(분기평균 1.1조원)은 '23년 상반기(분기평균 1.3조원) 대비 낮은 수준

※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既 발표('25.2.28일)

< 개인신용대출 및 보증부대출 신규취급액 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1Q	2Q	3Q	4Q	1Q	2Q	3Q	4Q		
개인신용대출	21.7	17.5	11.6	3.0	3.0	2.8	2.8	14.3	3.2	3.5	3.6	4.0
보증부대출	3.6	4.1	4.6	1.3	1.3	0.9	1.1	4.4	1.0	1.1	1.1	1.2
햇살론	3.2	3.5	3.2	1.1	0.9	0.6	0.6	2.6	0.5	0.6	0.7	0.8
사잇돌	0.4	0.6	1.4	0.3	0.3	0.3	0.5	1.8	0.5	0.5	0.4	0.4

□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 저축은행은 지역내 중저신용 가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 담당

※ 관련 규제 : 영업구역 제도(6개 영업구역*),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등
 † ①서울, ②인천·경기, ③부산·울산·경남, ④대구·경북·강원, ⑤광주·전라·제주, ⑥대전·세종·충청

-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제 규모(47.7%)와 인구(49.1%) 비중에 비해 저축은행 여신의 비수도권 비중(34.3%)은 낮은 상황

< GRDP · 인구 비중 vs 저축은행 여신 비중 >

(단위 : %)

구 분	GRDP 비중('23년)	인구 비중('24년말)	저축은행 여신 ('24년말) (차주 소재지 기준)
수도권	52.3	50.9	65.7
비수도권	47.7	49.1	34.3

□ 신용대출 역량 미흡

○ 저축은행의 총대출 중 가계신용대출 비중*은 타 업권 대비 높으나,

* '24년말(%) : (저축은행) 28.0 (여전) 17.9 (은행) 6.1 (상호금융) 3.5 (보험) 2.9 (새마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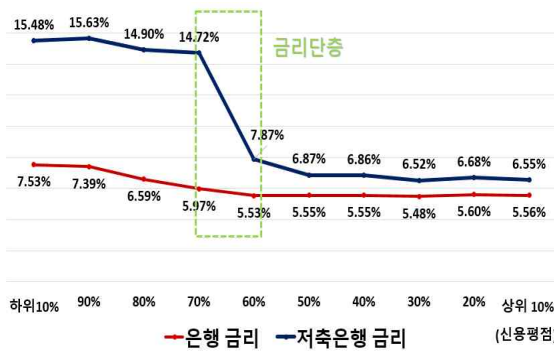
<저축은행 자산규모별 전체 대출 중 가계신용대출 비중('24년말)>

자산규모	저축은행 수	신용대출 비중
0.3조원 ↓	17개	3.6%
0.3~1조원	31개	3.9%
1~2조원	13개	22.7%
2조원 ↑	18개	34.4%
전체	79개	28.0%

-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은 대형사 위주로 공급*되며, 79개사 중 45개사는 미취급

* SBI, OK 등 상위 10개사가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78.9% 차지('24년말)

<신용평점 구간별 신용대출 금리('24.10월말)>



- 신용평가 정보 부족, 신용평가시스템 미흡 등으로 중저신용자의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금리단층 발생

□ 엄격한 M&A 규제 및 부실채권 정리수단의 제약

- 대규모 구조조정('11~14년) 이후, 지역주의 원칙, 무분별한 대형화 방지 등을 위해 저축은행간 M&A 기준*을 마련·시행('17.4월)
 - * (인수) 동일 대주주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제한 (합병)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간 합병 불허
 - 최근 업황 악화 등으로 저축은행간 M&A 등 시장자율 구조 조정이 필요하나, M&A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한 상황
 - ※ '23.7월 M&A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도권 및 부실(우려) 저축은행 등에 대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M&A를 허용하였으나, 이에 따른 M&A 실적은 전무
 - 규제체계 정비에 맞추어 시장자율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M&A기준을 정비해 나갈 필요
- 제도권 금융업권 중 취약한 차주의 금융공급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타 업권과 달리 부실정리를 위한 수단이 미흡*
 - * 은행(유암코, '09.10월 설립), 농협(농협자산관리회사, '02.8월 설립), 새마을금고(MCI대부, '13.8월 설립), 신협(KCU NPL 대부, '24.7월 설립)

◇ (1단계) 저축은행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인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우선 추진

※ ①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②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③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 (2단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경영건전성 강화 등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

* (예시)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차등화된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 등

○ 규모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체계 마련, 역할에 부합하는 규제 합리화 및 M&A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

* (예시) 영업구역 규제, 유가증권 보유한도 규제 등

III.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 기본 방향 >

저축은행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제고

추진방향	추진과제
<p>①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②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햇살론 가중치 부여 ③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제공 ④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 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p>②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② 중소형사 개인신용대출 취급 유인 제고 ③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p>③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율적 M&A 활성화 ②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영 ③ 증양회 차입한도 상향 ④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⑤ PF 新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반영

1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1.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서울보증보험-업계 협의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저축은행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사잇돌2)*을 '16.9월부터 취급

* 민간 중금리대출 마중물 역할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100% 보증을 통해 공급하는 중금리대출 상품, 은행·상호금융권은 사잇돌1 취급

<참고>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사잇돌2) 신규취급액 현황

(단위 : 억원)

'21년	'22년	'23년				'24년					
		1Q	2Q	3Q	4Q	1Q	2Q	3Q	4Q		
4,129	6,497	14,269	2,711	3,323	3,568	4,667	18,234	4,729	4,984	4,353	4,167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등 타 정책금융상품*과 대상차주 범위가 상당부분 중복

* 근로자햇살론(신용평점 하위 20%), 최저신용자특례보증(신용평점 하위 10%) 등

- 대상차주를 저신용자 중심으로 제한*한 결과, 부실 증가·보증 공급 여력 감소 등으로 안정적 공급을 제약**

* 신용점수 기준 하위 30%에게 70% 이상 공급 의무('22.7월부터 적용)

** [대위변제금/보험료]가 130% 초과시 저축은행에 추가 보험료 부담('24년말 136.6%)

- **(개선방안)** 사잇돌대출의 안정적 공급 확대 등을 위해 공급요건을 개선하고, 보증심사모형 고도화 등을 통해 연체율 개선

- ① 공급요건을 '신용하위 30%에 70% 이상 공급'에서 '신용하위 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선 ⇨ 사잇돌2 대출 0.4조원 확대*

* 사잇돌1 대출(은행·상호금융권) 포함시 1조원까지 확대

- 필요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맞추어 정책금융상품과 중복이 감소하도록 중신용자 공급 추가 확대

- ②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하여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 고도화

* 네이버네이버페이의 비금융정보와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를 결합한 '네이버페이 스코어' 활용 등

2.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햇살론 가중치 부여(감독규정 개정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비율 이상의 여신을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토록 규제*

*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 (수도권) 50% 이상, (비수도권) 40% 이상

○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사잇돌대출, 민간 중금리대출은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액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음

□ **(개선방안)** 정책서민금융공급 확대 유인 제고를 위하여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햇살론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부여

※ 예대출 규제는 햇살론과 사잇돌에 동일하게 인센티브 부여(대출에서 제외)

○ 영업구역내 햇살론 취급액에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 가중치를 적용

※ '24년말 기준 영업구역내 햇살론 잔액(추정치)은 2.2조원이며,

150% 가중치 적용시 영업구역내 여신비율은 1.2%p 상승(62.2%→63.4%)

<참고> 중금리 대출 vs 정책서민금융상품 비교

구 분	중금리 대출		정책서민금융
	사잇돌대출	민간 중금리대출	근로자 햇살론
상품개요	중저신용자를 위해 저축은행이 SGI서울보증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해당 차주에 대해 일정금리 이하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복권기금)가 재원을 출연한 대출상품
금리	-	17.5% 이하 반기별 금융위 고시 금리	11.5% 이하 매월 금감원 고시 금리
보증여부 (보증주체)	100% 보증상품 (서울보증보험)	비보증상품	90% 보증상품 (서민금융진흥원)
규제 인센티브	예대출	대출(분자)에서 제외	대출(분자)에서 제외
	영업구역내 의무여신 비율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액 150% 가중치 부여	
			인센티브 적용 無

3.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제공 (시행세칙 개정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저축은행 예대율을 100% 이내로 제한*

*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25.6월말까지 규제비율을 105%로 완화중

-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및 사잇돌 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하나,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 미적용

* 민간 중금리대출 잔액은 18.3조원으로 총대출의 18.7%를 차지('24년말)

<참고> 저축은행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 ②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이하(금리상한 한도 17.5%)
※ '25.1월 ~ 6월 적용금리 : 17.14%

- (개선방안)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유인 제고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의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시 제외*

* 민간 중금리대출(18.3조원)이 햇살론·사잇돌대출(6.1조원)의 3배 수준인 점, 정책금융 상품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10%로 제한 ⇨ 예대율 1.8%p 하락(88.4%→86.6%)

※ 은행도 기업대출, 정책금융상품, 및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예대율 규제를 일부 완화(분자 제외 또는 분모 포함)

<참고> 저축은행 예대율 산식 개정(안)

$$\text{예대율} = \frac{\text{대출금} - \text{햇살론} - \text{사잇돌2대출} - [\text{민간 중금리대출} \times 0.1](\text{신설})}{\text{예금등}}$$

4.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 수도권 여신 쉼림 완화 (감독규정 개정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비수도권의 경제 규모(47.7%)와 인구(49.1%) 비중에 비해 저축은행 여신의 비수도권 비중(34.3%)은 낮은 상황*

* 비수도권 비중(%) : (저축은행 여신^{24년말}) 34.3 vs (GRDP^{23년}) 47.7 (인구^{24년말}) 49.1

- 특히, 저축은행 총여신(97.9조원)의 과반(59.5조원)을 차지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

*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

※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특정 영업구역(예: 서울)의 여신 비중이 100%인 경우에도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위반 아님

- (개선방안)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 차등화*

* (예시) 수도권 여신 90%, 비수도권 여신 110%

- 또한, 적용 대상 저축은행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여신공급 확대 등을 위한 유예 기간 부여(예: 1년)

<참고>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식 개정(안)

$$\text{영업구역내 여신비율} = \frac{\text{(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 中)} \text{ 수도권취급액} \times 0.9(\text{신설}) + \text{비수도권취급액} \times 1.1(\text{신설})}{\text{총 신용공여}}$$

* 사잇돌대출, 민간 중금리대출, 햇살론(예정)은 150% 가중치 부여

5.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평가매뉴얼 등 개정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은행·저축은행의 지역경제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 실시*

* 민간위원장, 금융위·금감원·행안부·금융연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발표

○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낮아 좋은 평가를 받을 유인이 부족하여 제도 취지 달성에 한계

※ 은행은 경영실태평가(약 3~4년 주기)와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에 활용되나, 저축은행은 경영실태평가(필요시 실시)시 제한적으로 반영

□ **(개선방안)** 평가결과가 우수한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저축은행 평가내용을 내실화

○ 최우수 저축은행(90점↑)은 경영실태평가지 경영관리(M) 등급을 상향*하고, 최우수·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포상** 실시

* (기존) 경영관리(M)의 세부항목으로 평가 → (추가) 최우수시 경영관리(M) 1등급 상향

** 금융의 날, 자금세탁방지의 날 등에서도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실시

○ 지역내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확대 유인 제고를 위해 평가 항목 등을 개선*

* 서민대출 지원실적에 서민금융상품 인정 범위 확대(햇살론 포함), 중소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 실적에 가중치 부여(1.5배) 등

<참고> 저축은행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요

- (평가대상) 자산 1조원 이상이며, 복수 영업구역을 운영('24년 12개사)
- (평가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13개 시·도
- (평가근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40의2④ 지역재투자 평가 실시 및 결과 공시)
- (평가항목) 정량평가는 3개 부문 8개 항목, 정성평가는 1개 부문 3개 항목

구분	평가부문 및 항목
정량 (90점)	1.지역자금역외유출(50점) : ① 지역별 예대율, ② 지역경제 대비 여신과리율, ③ 지역 여신 증가율
	2.중소기업지원(20점) : ① 지역별 중소기업대출/총 여신, ② 지역별 중소기업 경제기여도 대비 중소기업대출 과리율, ③ 지역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3.서민대출지원(20점) : ① 지역별 서민대출/가계대출, ② 서민대출 증가율
정성	4.지역금융 지원전략(10점) : ① 해당지역 경제기여도, ② 지역 서민 금융환경 기여도, ③ 기타 지역금융 지원전략

1.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업계 협력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이 어려운 중소형 저축은행은 업계 공동 신용평가모형인 표준CSS를 이용중*

*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CSS) 이용 현황('25.2월)

: 자체개발CSS(대형사 및 지주계열 저축은행 32개), 표준CSS(중소형사 45개) 등

○ 그러나,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취급 기피, 표준CSS 사후 관리 미흡 등으로 표준CSS를 통한 신용대출 취급이 저조*

* CSS 활용 미흡 → 신용대출 미취급 → 관련 데이터 미축적 → CSS 고도화 곤란

□ **(개선방안)** 중소형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저축은행업권 맞춤형CSS 지속 고도화

①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하여 중소형 저축은행간 대출 심사·관리 관련 데이터 공동 활용

② 취약차주·Thin Filer에 대한 신용평가역량 제고 등을 위해 대안정보*를 적극 활용

* (예시) 네이버페이 스코어(플랫폼 정보), 통신사 정보, 티맵 모빌리티 정보 등

③ 유관기관·전문가* 등으로 상시적인 CSS 공동관리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CSS 변별력·정확성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고도화

* 중앙회, 저축은행, CB사, 핀테크, 신용정보원 등

<참고> 신용대출 취급 우수 저축은행 사례 : ○○○저축은행

■ ○○○저축은행은 '24년말 총대출 중 52.5%를 가계신용대출로 취급하며, CSS 전담 조직 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CSS 고도화 등 추진

* ① (CSS팀) 신용대출 모형 및 전략 개발, 상품별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② (크레딧사이언스팀) 모형 및 전략 운영, 시장/고객 데이터 분석으로 인사이트 도출

③ (리테일심사팀) 대출 심사기준 수립 및 관리, 자동심사 외 수기심사 업무 관리

2. 중소형사 개인신용대출 취급 유인 제고 (감독규정 개정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중소형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 중 가계신용대출 비중이 낮아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

○ 아울러,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인터넷, 모바일앱 등) 취급 비중 증가* 등으로 영업구역 밖 차주의 대출 수요가 확대중

* 개인신용대출 중 비대면 취급 비중(%) : ('20년말) 26.0 ('22년말) 34.5 ('24년말) 48.2

□ (개선방안)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을 일부 우대*

* (예시) '영업구역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일부(50%)를 총여신(분모)에서 제외

<참고> 저축은행 자산규모별 전체대출 중 가계신용대출 비중('24.12월말)
(단위: 개사, %)

구분	0.3조원 미만	0.3~1조원	1~2조원	2조원 초과	전체
저축은행 수	17	31	13	18	79
신용대출비중	3.6	3.9	22.7	34.4	28.0

3.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1단계업계 협력 등 2단계법 개정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중소형 저축은행은 인력, 비용 등 여건상 별도 채권관리 부서 운영이 어렵고, 부실채권의 규모도 작아 부실채권 매각시 협상력 확보도 곤란한 상황

○ 또한, 지역내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대출 사후관리 업무수행 부담 경감이 필요

○ 한편, 은행·상호금융권은 자체 NPL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나, 저축은행권은 NPL관리 전문회사 미보유

* 은행(유암코, '09.10월 설립), 농협(농협자산관리회사, '02.8월 설립), 새마을금고(MCI대부, '13.8월 설립), 신한(KCU NPL 대부, '24.7월 설립)

□ (개선방안) 중앙회가 저축은행업계의 NPL 매입 및 위탁 추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 (1단계)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 설립*(~'25.2분기)

* 중앙회 출자(예: 지급준비에탁금 운용 수익금), 대부업 등록 등 필요

○ (2단계)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의 확대 수행 등을 위해 자산관리회사로의 전환 추진('25.3분기 이후)

* 위탁 추심업무 수행, 대부업법상 대부자산의 자기자본 10배 제한 미적용 등

1. 자율적 M&A 활성화 (시행령·인가기준 개정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업황 악화 등으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확충이 필요하나 대주주 여력 부족으로 증자가 어려운 상황

○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 M&A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평가

※ '23.7월 M&A 인가기준을 완화하여 비수도권 및 부실(우려) 저축은행 등에 대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M&A를 허용하였으나, 이에 따른 M&A 실적은 전무

<참고> 현행 저축은행 M&A 기준

구분	인수(대주주 변경)	합병
원칙	-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3개 이상 소유·지배 불허 * 2개 소유·지배는 제한없이 가능	-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불허
※ 동일 영업구역 내에서는 인수·합병 가능		
예외	-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영업구역 4개까지 확대되는 인수·합병 허용	
외	- ①부실(우려), ②Gray Zone 편입, ③구조조정 촉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수도권의 경우에도 영업구역 4개까지 확대되는 인수·합병 허용	

① **부실(우려) 저축은행** : 적기시정 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검사결과 재무상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경우

② **Gray zone* 편입 저축은행** : 자기자본비율이 9%(자산총액 1조원 이상 10%)에 미달
* 예보법령에 따른 예보 단독조사 대상

③ **구조조정 촉진 필요 저축은행** : 단기간내 대량의 예금인출 등 급격한 경영상황의 변화 및 금융위의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의 불안정성 등이 제기되는 경우로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축은행

□ (개선방안)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되, 무분별한 대형화는 제한하기 위해 한시적(2년, 필요시 연장)으로 M&A 기준 완화

- ① M&A 기준상 예외 적용되는 1)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되, 2)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합병시 비수도권 여신의 일정수준 유지 등 부대조건 부과

< 「구조조정 저축은행」 범위 확대방안 >

i) 부실(우려) 저축은행 기준

- (현행) 적기시정 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적기시정 조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개선)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한 경우도 포함

ii) Gray zone 편입(우려) 저축은행 기준(BIS비율 기준)

- (현행) 규제비율 +2%p 이내 (9%, 자산총액 1조원 이상 10%)
- (개선) 규제비율 +4%p 이내 (11%, 자산총액 1조원 이상 12%)

iii) 구조조정 촉진 필요 저축은행 기준

- (현행) 단기간내 대량의 예금인출 등 급격한 경영상황의 변화 및 금융위의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의 불안정성 등이 제기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 (개선) 충족명령 이행이 불가능한 대주주 결격사유* 발생으로 주식처분명령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

* (예시)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 ②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 저축은행 M&A유인 제고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 심사 없이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금융지주회사법 §42-2) → 타 업권의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도 금융지주회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2.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영 (업계 협력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저축은행은 경·공매 등으로 부실PF를 정리중이나,
 - PF 사업장의 유의(C)·부실우려(D) 비중*이 높고, 낮은 사업성 등으로 정리(경공매·수의계약·상각)·재구조화 속도도 더딘 상황
 - * '24.12월말 평가 기준 CD 비중(%) : [저축은행] 26.0(13.9조원中3.6조원) [전체] 9.5 (202.3조원中19.2조원)
 - 또한, 타 업권 대비 PF성 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도 높음
 - * '24년말(%) : (저축은행) 27.3 (상호금융) 20.4 (증권) 14.9 (여전) 8.8 (보험) 1.6 (은행) 0.7
- **(개선방안)**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부실PF 매입 수요 보완 등을 위해 1조원+a 규모의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 추진
 - 부실PF 정리 속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특히,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지방 PF사업장, 비주거용 PF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정상화 지원

<참고> 저축은행업권 공동펀드 개요

- **(펀드규모)** '25년 中 약 1조원+a ※ ('25.1Q) 0.5조원 ('25.2Q) 0.5조원 ('25.下) a
- **(펀드구조)**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
 - 선순위 비중을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재무적 투자자 모집
- **(펀드 운용)** 신속한 정리·재구조화를 위한 매입단위, 운용기간 설정 등
 - **(자산매입)** 경·공매 등이 어려운 부실PF 대출 및 토지담보대출*
 - * 신속한 재구조화 등을 위해 사업장內 전체 대주의 채권을 매입
 - **(운용기간)** 부실자산 고정화 방지, 신속한 재구조화·재매각 등을 위하여 펀드 운용기간을 최소화(2~3년)하여 운영하고, 운용전략* 등에 따라 펀드 운용기간을 차등화
 - * 재매각 목적의 펀드는 운용기간을 단기로 설정하고, 공사완공 목적의 펀드는 공사 완료시까지 운용기간을 설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

3.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 (금융위 의결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중앙회는 금융위로부터 차입한도를 승인*받아 저축은행 유동성 및 내국환 차액 결제 지원** 등 업무 수행

*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예·적금 등 수신 합계액의 30%내 범위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자금 차입 가능(저축은행법 제25조의9 등)

** 중앙회가 선결제를 통해 저축은행업권의 차액 결제 한도 소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

○ 현행 차입한도는 3조원으로 '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긴급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0.6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 현재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수신규모 증가*, 비대면 비중 확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디지털 뱅크런 대비,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한도 상향 필요성 제기

* 저축은행 예수금(조원) : ('10년말) 76.8 → ('22년말) 120.2 → ('24년말) 102.2

□ (개선방안) 지급준비예탁금 증가*, 차액 결제 및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회 차입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조원) : ('10년말) 3.08 → ('22년말) 4.95 → ('24년말) 4.25

** 1) 저축은행 수신 규모 확대 등에 따른 차액 결제 규모 증가 반영

2) 중앙회·저축은행 보유 국채 등을 통한 한은 RP거래 대상 선정('24.7월) 등 고려

○ 한편, 유사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자금용도별 차입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 승인 없이도 일정범위내* 용도별 한도 변경 허용

* 중앙회 이사회 승인을 통해 자금용도별 한도는 1.5배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되, 합계 차입한도(5조원)는 준수하도록 감독

<참고> 자금용도별 차입한도 승인(안)

자금용도	'11.2월 승인안	변경안	증액
내국환 차액 결제 지원	1,500억원	6,750억원	+5,250억원
자기앞수표 차액 결제 지원	600억원	250억원	△350억원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26,500억원	39,000억원	+12,500억원
중앙회 금융업무 수행 관련 유동성 자금 확보	700억원	4,000억원	+3,3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차입	700억원	-	△700억원
계	30,000억원	50,000억원	+20,000억원

4.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감독규정 개정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는 타 업권의 기준과 다르게 예외 규정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존재
- **(개선방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 합리화

<참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사례

- **(현행) 법적 절차(가압류·압류)가 진행되어 자산건전성 분류가 하향(정상→고정)된 거래처 채권에 관하여 타 업권*(여전, 상호금융)과 다르게 소액 관련 예외 규정 부재**
* (원칙 고정→예외 정상 허용)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
- **(개선) 가압류·압류에 대해 타 업권과 동일하게 소액 관련 예외 규정 마련**
※ '20.7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도 상호금융업권 분류를 감안하여 예외 규정 도입

5. PF 新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반영 (감독규정 개정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을 업계 모범규준으로 마련·적용중('24.6월~)
-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에 사업성 평가기준 원칙 등을 규율하고 있어, 자율규제로 강화되어 적용중인 동 개선안 반영 필요
- **(개선방안)** 기존 규정과의 정합성 및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해당 모범규준 개선안 반영*
* 사업성 평가 등급 세분화(양호, 보통, 악화우려 →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성 부여, 적시성 있는 대응 등을 위해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에 위임

IV. 향후 계획

□ 금년 3월부터 속도감 있게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세부과제 추진 (1단계)

○ TF,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포지셔닝, 경영건전성 강화, 대형사 중소형사간 양극화 등을 감안하여 규제체계 재정립 등 「저축은행 발전방안」 마련 (2단계)

<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

구분	과제명	필요조치	조치시기
①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①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업계 협력 (서울보증보험 등)	'25.4월
	②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산정시 햇살론 가중치 부여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	'25.2Q
	③ 예대율 산정시 민간 증금리대출 인센티브 제공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25.2Q
	④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	'25.2Q
	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매뉴얼 등 개정 (금융위·원)	'25.2Q
②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①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업계 협력 (중앙회 등)	'25.2Q
	② 중소형사 개인신용대출 취급 유인 제고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	'25.2Q
	③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1단계) 업계 협력 등 (중앙회 등) (2단계) 법 개정 추진 (금융위·원)	'25.2Q '25.3Q 이후
③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① 자율적 M&A 활성화	시행령 및 인가기준 개정 (금융위·원)	'25.2Q
	②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업계 협력 (중앙회 등)	'25.3월
	③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	'25.4월
	④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	'25.2Q
	⑤ PF 新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반영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	'25.2Q